

테네시주 산재 보상국

220 FRENCH LANDING DRIVE NASHVILLE, TENNESSEE 37243-1002 (615) 741-2395 (800) 332-2667

보고된 산재 통지

테네시주 산재 보상국에서 귀하가 업무상 상해를 입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본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귀하의 청구가 수락되었거나 귀하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본 통지는 고용주가 보험사와 산재 보상국에 귀하의 청구를 보고했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귀하의 고용주는 승인된 목록에서 선택한 의사로부터 귀하의 상해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선택한 의사가 귀하의 승인받은 주치의가 됩니다.

또한, 귀하의 고용주가 귀하의 청구를 처리하고 귀하의 회복을 도와줄 산재 보상 보험 조정인에게 연락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조정인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는 본 통지에 동봉된 별도의 서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정인은 (귀하가 고용주에게 상해에 대한 통지를 제공한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를 수행하고 청구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청구가 수락되는 경우, 동봉된 "<u>테네시주 산재 보상에 대한 초보자 안내서</u>"에 설명된 대로 처방, 승인받은 주치의로부터 받는 진료에 대한 교통비 환급 및 부분 임금 대체 급여(임시 장애 급여라고도 함)을 포함한 진료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임시 총 장애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장애가 시작된 날(귀하의 승인받은 주치의가 지시한 휴가 시작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첫 번째 지급금을 귀하에게 보내야 하며 이후의 모든 지급금은 귀하가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역일 기준으로 다음 15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 승인받은 주치의가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제한 사항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여 임시 부분 장애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급여는 정상 급여가 지급되는 일정과 최대한 비슷한 일정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청구가 거부되는 경우, 귀하의 청구에 배정된 조정인이 귀하에게 거부 사유를 제공하는 거부 통지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용주와 조정인은 승인된 청구("보상 가능" 청구라고도 함)에 대해 산재 보상국의 도움 없이 필요한 모든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먼저 고용주와 조정인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조정인에게 문의한 후에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산재 보상국에 (800) 332-2667번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상국은 귀하, 고용주, 조정인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산재 보상국의 역할은 산재 보상 청구가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처리되고 필요 시 귀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The Tennessee Department of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is committed to principles of equal opportunity, equal access, and affirmative action. Auxiliary aids and services are available upon request to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ennessee Department of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Authorization No. 337675; This public document was promulgated for electronic use.